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04.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2. 정성국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 1.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2.)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성국의원)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행한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¹⁾

이 중,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는,

1)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현행법에 따르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제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일회적’으로 행한 심각한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

또한 보호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 이루어지므로,²⁾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될 때까지 보호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일시적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에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2)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기하는 행위가 포함될 경우, 교원이 입은 피해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심각성에 따라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므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기준에는 침해행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심각성, 고의성 등이 포함되는데, 현행법의 반복적 침해행위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개정안의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침해행위는 지속성과 심각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김도읍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